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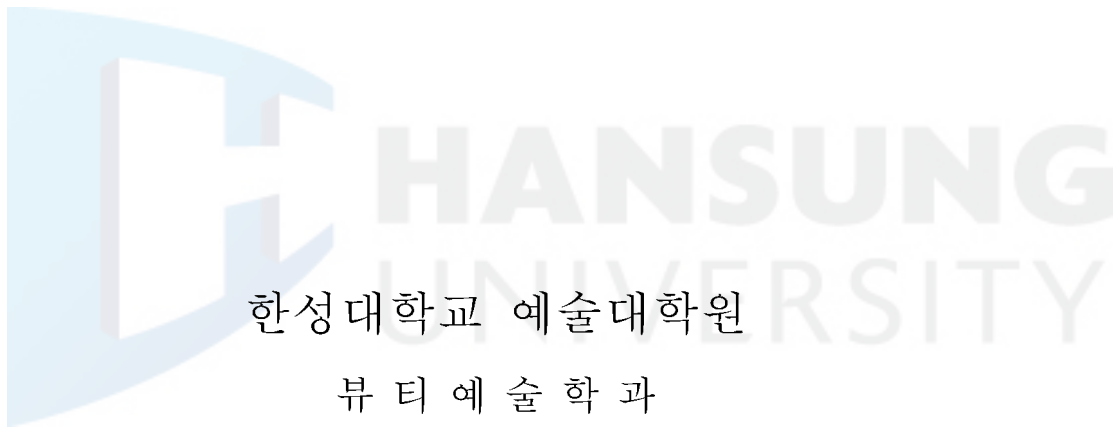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2012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김 동 훈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고승용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The need for beauty system improvement

-the need for about cosmetologist act enactment mainly-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김 동 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승용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The need for beauty system improvement

-the need for about cosmetologist act enactment mainly-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김 동 훈

김동훈의 예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김 동 훈

사회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 법에 맞추어 법률과 관습법등 사회를 규율하는 법규가 탄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용 산업도 이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미용 관련 법령인 [이용사 및 미용사]에 관한 법률이 과거에도 존재 하였으나 [공중 위생법]이 생기면서 통합 입법으로 인하여 [이용사 및 미용사] 법률은 사라지고 [공중위생법]에 통합 되어 현재 미용 제도는 국가 공인 미용사 자격증(피부 관리사) 및 미용장제도와 [공중 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법]변경되어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관리 되고 있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규정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상행위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가장 원초 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부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습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 세계 어느 곳이던 상행위와 관련된 요컨대 국내의 상법과 같은 법령 혹은 관습법등을 가지고 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통제와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상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신법이 생겨났고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에 관련된 법률이 생겼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상 상행위에 대한 [전자 상거래법]을 들 수가 있다. 미용 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해오며 더욱 전문화 세분화 되었다. 최초 미용업의 형태인 두발 손질의 내용뿐만 아니라 미용 관련 교육 , 헤어숍 , 미용 관련 잡지 , 미용관련 제품 판매 업소, 피부 관리실, 네일 케어샵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변화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질적 양적으로 그 규모나 질이 향상된 미용업 은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수준향상 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7년 미용업의 규모는 3조3천억 원 에 이르고 2011년 현재 정부에서는 미용 업을 신 경제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이에 지원 정책을 수립중이다.

이런 현실 적인 움직임과는 다르게 미용 관련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용업의 특성상 기술직과 서비스직 하나로 통합되기 힘든 성질을 띄고 있음에도 각 단체 및 정부 부처에 따라 미용업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용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미용업(미용실, 피부관리샵, 네일샵을 포함한 미용관리 시장)의 세분화와 자격증 제도에서 미용실에서의 업무 범위 및 피부, 네일아트, 헤어숍 등 세분화된 미용업의 각 업무 형태 자격증 제도의 실질적 효력 및 자격증제도의 분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이에 하나하나의 부분의 문제점이 아닌 원론적인 미용업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미용업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신산업 성장 동력이 되어 뷰티 산업이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주요어】 미용 제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한국의 미용 제도	7
1. 독립된 미용사법으로의 한국의 입법례	7
2. 공중위생법	8
3. 공중위생 관리법	9
제 2 절 외국의 미용제도 및 국내제도의 비교	10
1. 해외의 미용관련 법률	10
1) 뉴욕 주의 미용사법	11
2)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법	12
3) 일본의 미용관련법령	15
2. 한국의 국가기술 자격증 제도	18
3. 한국, 미국, 일본 각 나라의 미용 제도 비교	20
제 3 장 연구문제	22
제 1 절 설문조사	22
1. 연구대상	22
2. 설문지 구성	22

3. 자료분석방법	23
4. 분석 결과	24
1)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24
2) 자격증제도에 대한 인식	25
3) 미용제도에 대한 인식	35
제 2 절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	45
1. 미용사법의 필요성	45
2. 미용사법의 입법방안 고찰	47
 제 4 장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53
【부 록】	55
ABSTRACT	61

【 표 목 차 】

[표 1]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5
[표 2]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	6 , 49
[표 3] 한국의 자격 제도	18
[표 4] 한국 과 외국의 미용 제도 비교	21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표 6] 2008년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26
[표 7]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도움정도	28
[표 8] 세분화된 미용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 ·	29
[표 9]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미치는 영향	31
[표10]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의 수습기간(3-6개월) 후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 의 수행 가능여부	32
[표 11] 미용업의 업종형태에 대한 인식	33
[표 12]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35
[표 13] 1986년 이전 국내에 있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인지여부	36
[표 14]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 ·	38
[표 15]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40
[표 16] 새로운 미용관련 법령 제정 시 보완되어야 할 점	41
[표 17]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43
[표 18]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44
[표 19] 미용사 (일반) 합격률 및 응시자수	45
[표 20] 미용사의 면허 등에 관한 규정	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아하 한국)의 미용 관련 제도로는 [국가공인 자격 제도]의 미용사 와 미용장의 과정과 실제 업무의 규율 등을 관장하고 있는 [공중위생 관리법]이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미용사에 대한 법안이 따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용이 발달 되고 한국의 미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과 미국 이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 성문법¹⁾ 인 한국과는 달리 불문법²⁾을 채택하고 있고 각주의 법이 각자 다르기에 다소간의 법적 차이점은 보이나 뉴욕의 경우 일반 상법 내에 미용 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통합법으로서의 법률안에 속하여 있어 이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 관리법] 과 다소 유사한 점이 있으나 미용업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놓았다는 점이 국내의 통합입법으로 서의 기타 유사 업종과 통합한 관리법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와 한국에 인접한 일본의 경우 별도의 미용사법을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어 미용인들의 입지 및 그 위상이 높아 지고 별도의 법령의 존재로 인하여 업무의 규정이 명확하여 졌다.

특이할 점은 일본의 경우 현재 국내와 같이 별도의 법령이 없이 국내는 [공중위생 관리법] 속 미용업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법령으로 규제되어 지고 일본은 각 시도지사가 제정한 명령에 의해 각각의 시도에 실정에 맞추어 시행 되어 졌다.

1) 성문법 : <http://100.naver.com/100.nhn?docid=91932> (네이버 백과사전)

2) 불문법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863> (네이버 백과사전)

그러나 1947년 이용사법이 제정되어지고 10년 후인 1957년 6월에 미용과 이용업의 업무내용이 각각 전문성과 독자성을 높아감에 따라, 특히 퍼머넌트 웨이브와 미안술 도입에 따라서 기술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미용업계로부터 제도를 이용에서부터 분리하여 미용만을 독립시킨 법률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은 1961년 제정되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 법] 이 폐지된 이후 [공중위생 관리법]에 미용업만 포함되어진 통합입법으로서의 통합 관리가 되게 되었으며, 미용업에 관련된 내용은 단 3개의 조항에 불과하며 이용업을 포함하여도 4개 조항만이 존재 한다.³⁾

각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그에 기초가 되는 각 산업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필요성을 느낀 국회에서도 16대 회기인 2000년과 17대 회기인 2007년에도 [미용사법] 또는 [미용업 법안] 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계속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미용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로 하여진다.

이렇듯 정확한 미용업의 규정 및 제도의 현실과의 괴리감 및 부재 인하여 최근 야기된 문제 중 하나로 미용업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문제 및 국가 자격증 제도에 대한 현 미용업 종사자들의 불신 및 미용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미달의 미용업 종사자의 양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지고 각 나라와 기술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진 현대에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지지 아니하고 법령안의 내용만으로는 수조원대로 올라선 미용업의 규모나 질적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하물며 미용업의 질적 양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은 꿈을 꾸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3)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A%B3%B5%EC%A4%91%EC%9C%84%EC%83%9D%EA%B4%80%EB%A6%AC%EB%B2%95&x=23&y=9#liBgcolor1> (법제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미용업에 대한 국 내외 관련 법령 혹은 학술지 등을 비교 검토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하여 [미용사법]의 제정 방법을 강구 하여 미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미용 제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을 검토하고 미용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의 내용 및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미용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방안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이 현행 미용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미용사법의 제정]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현 미용업 종사자들의 인식 및 미용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을 짚어내고 선행 논문을 토대로 미용사법 과 관련된 미용법에 대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법령 및 기타 미용법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문헌적 검토를 하였으며, 해외 법령 및 국내의 입법예등을 통하여 새로운 미용사법의 입법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법은 국가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틀이고 한 시대가 추구하는 이념의 산물이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데 < 법 령 >은 정책 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공적인 형식 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 부흥하기 위하여는 각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업무의 범위및 업무의 내용등) 및 제한 내용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 졌을때 해당 산업은 체계적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 할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미용관련 제도는 [공중위생 관리법] 과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가 있다. 별도의 미용업 관련 법령은 존재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미용계의 현실이라 하겠다.

국내 미용 산업은 2008년 3조 3천억 원 의 규모였던 미용업이 2011년 현재 약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그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있다.⁴⁾

하지만 현재 국내의 미용제도는 앞서 말한 [공중위생 관리법] 과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에 의하여 관리되어지고 있어, 현 미용산업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용 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중위생 관리법] 의 3개의 조항으로 관리 되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뷰티지식 정보 포털

<http://www.beautynury.com/news/view.asp?idx=46691&whr=&keyword=§ion=all&searchcategory=&mode=list&boundary=total&ptype=simle&page=1>

[표 1]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 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원 : 법제처. (2011)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건 복지부령에 의하여 세부 업무의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건 복지부령의 이용업 및 미용업의 업무 규정에서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게 된다.

미용업의 특성상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제품 등이 매년 출시되어지고 표준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규정은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만이 규정 되어져 있다. 이는 법령의 특성상 명확함이 요구되어지는데 미용법이 아닌 법령이 가지는 한계성이 여기서 야기된다. [표 2] 참조

기술이 새롭게 생겨나고 제품도 변화 되어감에 따라 표준은 꾸준히 변하게 되는데 법령의 규정에 포함되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 미용 기술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일례로 미용실에서의 두피관리시 미세다룬침의 사용은 사실상 미용업의 규정에는 어긋나는 기술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되게 된다. 허나 이는 미용업이 가

지는 두피관리의 새로운 기술이며 과학적으로도 침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미세다룬 침의 특성상 소독에 관련된 공중위생법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해결되어지는 문제임에도 명문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용 선진국인 일본 및 미국의 법률을 토대로 비교·분석 하여 선행논문들에서 문제시 되어 왔던 여러 미용 관련제도를 비교 분석 할 것이다.

[표 2]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

제14조(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 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

* 자료원 : 법 제처. (20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절 한국의 미용 제도

1. 독립된 미용사법으로의 한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에 미용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1년 12월 5일 공포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었다. 본 법 제정 이전에는 일본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환경 위생법]으로 미용사의 자격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해방 직후 서울의 미용실 수는 400개가 채 안되었지만 1961년도에는 전국의 미용실 수가 7,612개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무면허업소의 증가와 무자격자의 시술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⁵⁾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1961년 12월 5일 법률 제 798호로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공포하였다.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용자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이용자나 미용사는 매년 2회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건강진단의 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5) 정연구, 「한국미용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관동 대학교, 1998. p47

넷째,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이용 또는 미용을 할때의 준수사항을 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1차 개정은 10년 뒤 시도 되었는데, 제 6대 국회인 1975년 7월 13일 ‘보조원’에 대한 규정과 ‘미용사 면허제 실시를 일원화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신형식 의원 외 11인의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1965년 10월 19일 상정되어 정부측 설명과 3차에 걸친 질의및 토론을 벌였지만 1976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⁶⁾

이후 [이용사 및 미용사법]은 1986년 [공중 위생법] 에 통합되어지게 된다. 법률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에는 사양산업 혹은 더 이상 동종의 법률이 필요치 않을때 국회의 논의 후 의결에 의하여 폐기 혹은 통합 되어지게 되는데, 미용업의 경우 미용업 영업소의 성장경향을 보더라도 1998년에 7만8천, 여개이던 것이 2006년에 이르러서는 8만1천5백 여 개로 증가하였다.⁷⁾ 산업은 점차 증가 하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법이 [공중 위생관리법]의 부령으로 통합은 확장적 의미를 가질수 있는 미용업에 대한 규정을 한정적 평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

2.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은 1986년 5월 10일 공중위생 관계법령이 다원화되어 상호연관성의 결여와 함께 법령개정의 경직성으로 각종 기준 및 처벌형량에 대한

6) 이한웅 외, 『 미용법규론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2008, p90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각종 행정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4개 법을 흡수 통합하고 세탁업 등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대체한 단독법이 아닌 명령의 부령으로 제정된다.

공중위생법은 '제1조 목적'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적객업 및 기타 위생관련 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인하여 미용업 관련 법령은 공중위생법에 통합이 되는 통합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관련 조항이 더욱 명확해 짐으로써 법령해석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업무의 범위는 한정 되어지며 현재는 사양산업에 가까운 세탁및 공중 목욕의 기타 업종과 통합적으로 관리되게 되었다.

3. 공중 위생 관리법

공중 위생 관리법은 은 1999년 2월 8일 법률제839호로 제정되어 1999년8월9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1986년에 제정되어 13년간 시행된 [공중 위생법]이 폐지 되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 은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 시설등에 대하여 시설 기준등을 갖추것을 요구하는등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음란 퇴폐등과 함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풍속에 관련된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점 을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진입규제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 하는 한편 공중위생관련 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 대상으로하여 풍속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률에서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에 대

한 위생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률의체계를 정비 하려는 목적에서 이법이 제정되었다.

[공중 위생 관리법]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직과 그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 구조로서의 조직 규범을 가진다. 조직 규범으로서의 [공중 위생 관리법] 은 법의 하위개념인 명령의 부령이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그 내용이 명확해야하고 또한 변경이 쉽게 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중 위생 관리법] 은 1999년 2월 8일 [공중 위생법]이 폐지되고 최근 2011년까지 매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으로 보자면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수 있을것이라 보여질수도 있을것이나, 최초에 만들어진 [공중위생 관리법] 의 미흡한점이 많고 현실과 거리가 먼 가중 처벌 규정등으로 인하여 미용인들의 탄원에 의하여 바뀌어진 부분이 많다.

[공중 위생 관리법]의 모태가 된 [공중 위생법]은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 3822 호로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기존의 숙박영업 · 공중 목욕장영업 ·이용사및미용사법 · 유기장영업 등 4개의 공중위생 관련 법률을 흡수, 통합 하고, 당시 자유업이던 세탁업등 3개의 공중 위생 관련영업을 신고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입법한 법 이었다.

제2절 외국의 미용 제도 및 국내 제도의 비교

1. 해외의 미용 관련 법률⁸⁾

해외 미용관련 선진국중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와는 다르게 통합입법의 형태가 아닌 독립법으로써의 미용사법으로 미용업관련 법률이 존재 하고있다.

8)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 국민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수준 향상 방안 연구」. 2007. 39p

미국의 경우 다른 제도나 법령과 마찬가지로 주마다 제도가 상이하여 미용업은 각 주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문화가 발달하고 한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뉴욕주의 미용사법

뉴욕주는 일반상법 (New York State General Business)내에 미용사와 미용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합법(consolidated laws)이라는 법률안에 속하여 있다. 이 법률에서는 두 가지 면허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기술 습득에 의한 면허와 소유 또는 운영을 위한 면허 (owner's license)로 나뉘어 있다.

미용실 소유면허는 그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설비, 공간배치도, 손님과 종업원을 위한 위생에 관한 실태와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증거와 면허신청자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 취득후 면허로 전환하여 미용업장을 개설할시 영업 개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미용업소의 개설을 할수 있는 것과는 다른점이 있다.

이 법에서는 면허 신청자 및 예상신청자의 자격과 적격의 심사권, 면허신청자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 지정된 의사가 검진한 신체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시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수수료를 받고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미용업과 관련된 주무장관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미용사 면허시험은 미용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가 주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자격 요건에 관계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첨부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사진,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법규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이수 증명서, 인가받은 미용기관에서 2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교육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3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서, 주 정부 인가 미용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부인가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 이 법이 정하는 신청요금 및 수수료, 이 법이 정하는 신청요금 및 수수료, 이법이 정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증명서, 신청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출 전 30일이 지나지 않은 진단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진단서로서 주무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함)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면허시험은 원칙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어야하나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주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치를 수 있으며,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면허 신청인이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을 경우, 그리고 면허 취득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와 증거가 충분했을 경우 법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 및 수수료를 접수하고 미용업 운영 및 종사를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뉴욕주의 미용사 면허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후2년간 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 수수료를 접수하여 인가하고 있다. 만료후 1년 이내 미용사 면허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세금 및 수수료를 내지 않은자는 10달러의 추가 요

금을 내야하며, 5년 이내에 면허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에 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사법

캘리포니아주는 미용 및 미용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act)을 두고 있는데 ‘제1조 행정’ ‘7312항 장관의 권위와 의무’에서 장관은 행정절차 법대로 합당한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여 면허교부 신청자들을 위한 시험을 실행, 관장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면허를 발부한다. 채택된 규정들을 위배하였다고 입증되는 사람들을 징계하며, 미용국에서 인가된 시설, 학교, 전문업소에서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히 요구되는, 고용을 위한 위생상태와 예방조치를 관장하는 규칙들을 채택한다. 본 규칙들은 정부법 제2권3,5장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채택되며, 주 보건후생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신청’ ‘7316항 미용 업무’는 가지런히 하기, 장식하기, 말기, 웨이브 주기, 무기게 퍼머 웨이, 세척, 커트, 샴푸하기, 곱슬모발 풀기, 짧게 자르기, 탈색, 염색, 일시적 컬러링, 모발펴기, 양모제적용, 혹은 사람의 머리털을 어떤 다른방법으로 처리하기, 아름답게 하기 등이며, 두피, 머리, 목, 팔, 사람의 상체부분을 화장품, 방부제, 토닉, 로션 또는 크림이나 손, 고안품, 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사지, 세척혹은 자극하여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또 몸에 난 불필요한 털을 빛의 파장 사용을 제외하고, 탈모제나 핀셋, 화학제품이나 고안품 혹은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며 자르기, 다듬기, 윤기내기, 염색, 일시적 채색, 세척, 매니큐어바르기, 어떤 사람의 손 또는 발을 손질하기,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있다. 본항에서 볼수 있듯이 앞서 국내의 법과는 다르게 미용업의 규정이 세부적이며 최신 유행에 맞출수 있도록 미용업의 업무에 있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점을 볼수있다. 이와 더불어 7317항에서는 자격이 없거나 사무국에서 발행된 면허 없이 이, 미용에 종사하거나 또는 보수를 위하여 제모술을 시술하는 것, 또는 사무국에 허가된 장소 이외의 업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허가가 없이 이, 미용과 제모술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3조 시험자격’ 즉 ‘7321항 미용사 시험의 응시요건’ 으로는 17세 이상인 자,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법에 의해 거부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무국으로부터 인가된 학교에서 미용과정을 이수한 자, 동등한 기간 동안 본 주 외에서 연구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채택된 커리큘럼의 수업으로 미용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을 갖추고 미용술을 실습한 자 이다.

한국의 자격증 제도와는 다소 다른점이 있는것은 제 4조의 견습생 제도인데 한국의 비공식 스텝기간이라고 하는 자격증에서는 인준하여주지 않는 각 미용 업소만의 견습 기간을 법규로 규정해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7332항에서 견습생은 담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면허취득자의 감독 하에 인가된 시설에서 이용, 미용, 피부관리, 제모술의 지식을 학습, 습득함에 있어서 인증되어, 사무국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 하고 있다. ‘7335항 견습생면허의 만료’에서는 견습생 면허는 발급되었던 날짜로부터 2년에 만료되며, 견습생의 날짜에는 다음 면허시험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며, 견습생이 면허시험에서 두 번 실패하게 될 때. 첫 번에 발생한 날짜에 두 번째 시험 날짜가 주어진다.

‘제5조 시험’의 ‘7337.5 이전신청, 면허시험’에서 사무국은 승인된 미용술, 제모술, 또는 이용학교에서 자격요건에 요구된 시간의 과정이나 커리큘럼의 75%를 마친 연구생 (매니큐어리스트 과정의 연구생을 위해서는 60%)을 위하여, 시험을 승인, 신청서류를 위해 마련한 법규를 채택한다.

‘7338항 시험내용’에서는 면허를 위한 신청자의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두 가지이며 사무국에 의하여 승인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가르친 과목들을 채택 한다. ‘7342항 면허 발행’에서는 면허시험에 통과하고, 법에 의해 요구된 다른 자격을 소유한 자, 면허 수수료를 면제받은 신청자에게 사무국에 의하여 면허는 그 소지자에게 그 직업에 종사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가지 다른 특이할만 한 점은 ‘제8조 학교,교사, 그리고 교사 과정’의 ‘7362항 사무국에서 승인한 학교’는 직업회의에서 면허를 부여한 학교이거나 공립학교이며 승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습시간은 사무국에서 설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600시간 미만의 실습 및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에 정하고 있어 교육에 관련된 법령이 없는 한국의 미용 제도와는 다른 교육에 관련된 법규를 규정해 놓아 자격없는 미용 교사의 양성을 억제 하는 장치를 적용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3) 일본의 미용관련법령

일본의 경우 1947년 이용사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0년 후인 1957년 미용사법이 제정되었다. 미용사법은 1957년 6월 3일 법률 제 163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 31일 공포된 미용사법시행령, 동년에 제정된 미용사법시행규칙 등의 기본법령과 함께 미용업의 홍지침 (1983.12.20 후생성고시 제 206호)에 의한 미용사양성 시설지정규칙(1998.1.27. 후생성령 제8호)등의 명령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1957년 미용사법이 제정 되기 전까지는 독자의 법률이 아닌 이용사미용사법이란 법률로서 미용업과 함께 규제되어 왔다.

1947년 이용사법이 제정되어지기까지는 미용사법은 법률이 아닌 국가가 임명한 시도지사가 제정한 명령에 의해 각각을 시도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되어져 왔다. 즉 규칙이 시도지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현재의 미용사 법과 같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진 것이 아닌 법률 이었다. 그러므로 당시는 경찰 당국이 미용업의 제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비민주적인 색채가 강했다.

1947년 제1회 국회에서 내각으로부터 이용사법안이 제출, 가결성립 되어 동년 12월에 공포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이용사법이 시행되었다. 제정당시의 이용사법은 현재와 같은 미용업만을 규제한 법률이 아닌 동시에 미용업도 규제하는 법률이었다.

당시 미용사 면허는 후생성 대신이 지정한 양성기관(수료기간 1년 이상)을 졸업하거나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미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한 자가 취득 가능하였고, 미용실도 신고서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미용사 양성기관을 졸업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자에 준하여 면허취득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미용업계에 문하생제도를 온존 유지 시켜 미용사의 자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방관 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나 법 개정을 하였으며, 1948년 7월부터 양성기관 졸업자의 무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5년후인 1953년 7월 1일 이후에는 미용사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나서 1년 이상 실기 실습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미용

사 면허를 부여하지 않게끔 이용사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양성기관으로 통신 과정이 개설, 통신교육에 의한 미용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1957년 미용과 이용의 업무 내용이 각각 전문성과 독자성을 높여감에 따라, 특히 퍼머넌트 웨이브와 미안술의 도입에 따라서 기술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미용 업계로부터 제도를 이용에서부터 분리 시켜서 미용만을 독립시킨 법률화하기를 희망하는 요망이 점점 강해졌다. 이 요망에 응하여 그해 6월에 새로운 미용사법이 제정 되어졌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이용사미용사법도 개정되어 명칭이 이용사법으로 되어 명칭이 이용사법으로 되어 미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고 이용 만에 관한 규제하는 법률로 각각 이용과 미용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1995년 미용사 양성기관의 입소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바뀌었고, 1995년 미용사 양성기관의 입소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바뀌었고, 실기 실습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미용사 시험 및 미용사 면허에 관한 행정사무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던 것을 후생성 대신이 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96년, 1999년 개정, 2000년 개정 그리고 2001년 6월 29일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일본의 “미용사법”을 보면

‘제1조 목적’을 보면 미용사의 자격과 미용업무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규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미용이란, 퍼머넌트 웨이브, 결발, 화장 등의 방법에 의해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미용이란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 미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미용소란 미용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서는 미용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 미용사가 될수있다.

‘제4조 미용사시험’에서는 미용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후생노동대

신이 실시를 하며, 미용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 하고있다. 또한 미용사 양성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의 일부만 도도부현지사가 행할 수 있으며, 미용사시험, 미용사 양성시설 기타 규정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 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5조 의 2 등록 및 면허증 교부’에서 미용사의 면허는 미용사시험에 합격 한 자의 신청에 의해 미용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후생노동대신은 미용사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미용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미용사가 아니면 미용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미용소 이외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제8조’에서는 미용업을 하는 경우 취해야하는 조치’, ‘제10조 면허 취소 및 업무정지’, ‘제 11조 미용소의위치 등의 신고’, ‘제 12조 미용소의 사용’, ‘제12조 2 지 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하고있다.

‘제12조의 3 관리자’ 규정은, 미용사인 종업원의 수가 평상시의 2인 이상인 미용소의 개설자는 해당 미용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용소마다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관리 미용사는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미용의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 이어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제13조는 미용소에 대하여 위생상 취해야 할 조치’ ‘제 14조 출입검사’ ‘제15조 폐쇄 명령’에 관한 규정 ‘제16조 미용사회 조직’ ‘제17조 벌칙’ ‘제18조 무면허 영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 ‘제19조 법인 대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하고있다.

2. 한국의 국가 기술 자격증 제도

한국의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국가기술 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 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⁹⁾

[표 3] 한국의 자격제도

자격제도	내 용	
국가 자 격 제 도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민간 자 격 제 도	민간 자격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공인 민간자격	민간 자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 민간자격

9) 국가기술 자격법 제 11조

국가기술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 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것이다.¹⁰⁾

현재 국내 미용사 자격증 제도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그 자격이 부여되는데 단지 미용사 시험만을 통과 하기 위한 미용사 자격증 제도 만으로는 실제 업무에 미흡한점이 있다. 해외 미용사 제도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한 시험을 치르기위하여는 최소한의 현장 실습시간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미용업의 특성상 창의적인 디자인 표현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근본이 되는 기술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친 기술 습득 기간이 필요하다.

허나 현재 국내 미용업중 헤어부분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후 미용 업소에 취직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수습 생활을 지낸후 미용업소의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속칭 헤어 디자이너라는 전문가가 되어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헤어디자이너 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직급 혹은 직위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그 실력과 창의성이 인정 되어지느냐 이다.

현재 실제로 구분되어지는 미용실 (헤어) 에서의 각 등급은 스태프 , 미용사(헤어 디자이너)로 나뉘어진다. 이외 관리직인 샵 매니저 와 원장 혹은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 등의 체계로 나뉘어진다.

외국의 사례에서 뉴욕주는 법규정이 정한 최소한의 교육이수 증명서, 인가받은 미용기관에서 2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교육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3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서, 주 정부 인가 미용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부인가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필요로한다.

10)최은정. 「 한국미용사 면허제도의 고찰과 국제적 조화방안」, 동덕여자 대학교 미용보건대학원, 2009. 15p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7321항 미용사 시험의 응시요건' 에서 17세 이상인 자,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을 마쳤거나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법에 의해 거부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무국으로부터 인가된 학교에서 미용과정을 이수한 자, 동등한 기간 동안 본 주 외에서 연구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채택된 커리큘럼의 수업으로 미용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을 갖추고 미용술을 실습한 자로 그 자격을 제한 하고있다.

3. 한국, 미국, 일본 각 나라의 미용 제도의 비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와 국외의 미용 관련제도는 비슷한 측면도 있으며 상이한 측면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는 자격증 즉 면허 제도와 미용 교육자 관련 조항이다.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미용사 자격시험을 행하기전 일정 시간의 현장 업무 시간을 자격요건으로 구비하고 있다. 이는 학원 및 기타 미용 교육기관에서 미용 기술이 부족한 사람 누구나 미용사 자격 시험이 주어지는 국내와는 매우 상이한 내용이라 할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용사를 Cosmetology(미용사), Esthetician(피부미용사), Manicurist (조술사), Massage Therapist(제모술사) 등으로 세분화 하고 있는데 평균 미용사는 1500시간, 피부미용사는 600시간 이수 후 자격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 네일의 경우 미국 주 연방 법규에 따라 400시간 또는 600시간, 제모술사는 500, 600, 750 시간 이수 후 자격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 피부미용사는 손을 사용해 얼굴 피부 관리, 손톱 관리를 하는 Basic과 얼굴과 목, 팔, 상체의 관리, 양손기구, 장치, 기타 재료에 의한 얼굴, 목, 상체의 마사지, 클렌징 등을 할 수 있는 Advanced로 크게 세분화 돼있다.

다른 측면으로서는 외국의 미용사법이 독립된 법률로서의 미용사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미용업의 단속 및 업무의 제한 즉 영업에 관련한 운영에 중심을 둔 점에 외국과의 차이점을 보인다.

일본의 [미용사법] 및 미국의 미용 관련법을 우리나라 미용 관련 법률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 4] 한국 과 외국의 미용 제도 비교

	국내의 미용사법	해외의 미용사법
법률 형태	통합입법	독립 법률
업무의 형태	미용사및 미용장으로 나뉘어져있다. 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경우 피부, 헤어의 두가지로 나뉘어져있다.	피부관리사 (피부) 헤어디자이너(모발) 미조술사 (손톱)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업무 규정	구체적이지 못하며 법규 명령의 특성상 법률 해석에 있어서 유동적이지 못하다.	업무 규정이 20여가지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그중 유추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규 해석이 자유롭다
미용 교육의 법률	제도적으로는 미용대학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존재하나 그와 관련된 법령은 존재치 아니하다.	별도의 법령으로 교육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 필수 이수시간등을 규정해 놓았다.
법적 성격	단속 법규	실체법

제 3 장 연 구 문 제

제 1 절 설문 조사

1. 연구 대상

2008년부터 시행된 미용사 (일반,피부) 국가기술 자격증이 현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미용사(헤어) 의 국가기술 자격증의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와 현 미용업에 종사중인 미용사들의 교육정도및 업무 종사기간에 따라 미용인들의 미용제도와 관련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약 한달여간 서울지역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 조사는 본인 과 주변 보조인들의 상세한 설명후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200여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89여부로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몇 가지 추정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1) 미용업에 관한 업무 만족도가 높을 경우 미용업 관련 제도및 미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것이다.
- 2)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적으로 미용업 (헤어) 에서의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이다.

- 3) 미용업의 형태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업과 기술이 적절히 혼합된 형태로 나오게 될것이다.
- 4) 현재는 폐지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5) 미용업 종사자들의 경우 미용 제도에 대한 관심은 적을것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용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5]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50명(26.5%), 여자 139명(73.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이하 112명(59.3%), 30대 53명(28.0%), 40대 이상 24명(12.7%)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10명(5.3%), 고등학교 졸업 73명(38.6%), 대학교 졸업 77명(40.7%), 대학원 졸업 24명(12.7%)으로 나타났고, 미용업 유형은 미용실 169명(89.4%), 미용 교육기관 8명(4.2%), 화장품 관련 4명(2.1%)으로 나타났다. 미용업 종사기간은 1년 42명(22.2%), 2-3년 33명(17.5%), 3-5년 26명(13.8%), 5-10년 47명(24.9%), 10년 이상 41명(21.7%)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는 만족 105명(55.6%), 보통 70명(37.0%), 불만족 14명(7.4%)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볼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의 평균 학력은 전문 대학교 이상의 수료자가 53.4%로 과반수 이상을 나타 냈다. 미용업의 유형은 미용실이 89.4%로 포커싱 설문 의 형식을 나타내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0	26.5
	여성	139	73.5
연령	20대 이하	112	59.3
	30대	53	28.0
	40대 이상	24	12.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0	5.3
	고등학교 졸업	73	38.6
	대학교 졸업	77	40.7
	대학원 졸업	24	12.7
	기타	5	2.6
미용업 유형	미용실	169	89.4
	미용 교육기관	8	4.2
	화장품 관련	4	2.1
	기타	8	4.2
미용업 종사기간	1년	42	22.2
	2-3년	33	17.5
	3-5년	26	13.8
	5-10년	47	24.9
	10년 이상	41	21.7
직무 만족도	만족	105	55.6
	보통	70	37.0
	불만족	14	7.4
합계		189	100.0

2)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

다음은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2008년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다음 [표6]는 2008년 미용사 자격증으로 피부 및 헤어를 관리하던 규정에서 새롭게 세분화되어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있다’ 20명(10.6%),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64명(33.9%),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 40명(21.2%), ‘잘

모르겠다' 54명(28.6%), '관심 없다' 11명(5.8%)으로 나타나 전체 44.5% 만이 비교적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무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비교적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08년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구분		2008년 개정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χ^2 (p)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있다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 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성별	남성	5(10.0)	16(32.0)	12(24.0)	13(26.0)	4(8.0)	1.062 (.900)
	여성	15(10.8)	48(34.5)	28(20.1)	41(29.5)	7(5.0)	
연령	20대 이하	10(8.9)	31(27.7)	26(23.2)	37(33.0)	8(7.1)	10.935 (.205)
	30대	6(11.3)	20(37.7)	10(18.9)	14(26.4)	3(5.7)	
	40대 이상	4(16.7)	13(54.2)	4(16.7)	3(12.5)	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2(20.0)	3(30.0)	4(40.0)	0(0)	20.185 (.212)
	고등학교 졸업	6(8.2)	29(39.7)	16(21.9)	19(26.0)	3(4.1)	
	대학교 졸업	11(14.3)	20(26.0)	15(19.5)	23(29.9)	8(10.4)	
	대학원 졸업	1(4.2)	12(50.0)	3(12.5)	8(33.3)	0(0)	
	기타	1(20.0)	1(20.0)	3(60.0)	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16(9.5)	58(34.3)	36(21.3)	50(29.6)	9(5.3)	14.497 (.270)
	미용 교육기관	2(25.0)	4(50.0)	1(12.5)	1(12.5)	0(0)	
	화장품 관련	1(25.0)	1(25.0)	0(0)	2(50.0)	0(0)	
	기타	1(12.5)	1(12.5)	3(37.5)	1(12.5)	2(25.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2(4.8)	12(28.6)	9(21.4)	16(38.1)	3(7.1)	17.856 (.332)
	2-3년	6(18.2)	9(27.3)	6(18.2)	11(33.3)	1(3.0)	
	3-5년	4(15.4)	7(26.9)	8(30.8)	6(23.1)	1(3.8)	
	5-10년	2(4.3)	17(36.2)	9(19.1)	14(29.8)	5(10.6)	
	10년 이상	6(14.6)	19(46.3)	8(19.5)	7(17.1)	1(2.4)	
직무 만족도	만족	10(9.5)	44(41.9)	20(19.0)	26(24.8)	5(4.8)	22.873** (.004)
	보통	9(12.9)	17(24.3)	16(22.9)	26(37.1)	2(2.9)	
	불만족	1(7.1)	3(21.4)	4(28.6)	2(14.3)	4(28.6)	
합계		20(10.6)	64(33.9)	40(21.2)	54(28.6)	11(5.8)	

** $p<.01$

2)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도움정도

다음 [표7]는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도움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그렇다’ 3명(1.6%), ‘그렇다’ 28명(14.8%), ‘보통이다’ 96명(50.8%), ‘아니다’ 50명(26.5%), ‘매우 아니다’ 12명(6.3%)으로 나타나 전체 16.4% 만이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미용사제도의 경우 세분화 되어진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시험제도 의 변화가 아닌 미용과 피부로의 이원화만 이루어졌을뿐 시험형태인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통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 하는 현 제도의 한계점이 실무에서 드러나는 대표정인 예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비교적 연령이 적을수록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도움정도

구분		세분화된 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주는 도움정도					χ^2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성별	남성	1(2.0)	5(10.0)	26(52.0)	14(28.0)	4(8.0)	1.509 (.825)
	여성	2(1.4)	23(16.5)	70(50.4)	36(25.9)	8(5.8)	
연령	20대 이하	3(2.7)	18(16.1)	62(55.4)	26(23.2)	3(2.7)	18.911* (.015)
	30대	0(0)	8(15.1)	18(34.0)	19(35.8)	8(15.1)	
	40대 이상	0(0)	2(8.3)	16(66.7)	5(20.8)	1(4.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1(10.0)	8(80.0)	0(0)	0(0)	15.986 (.545)
	고등학교 졸업	0(0)	10(13.7)	35(47.9)	23(31.5)	5(6.8)	
	대학교 졸업	1(1.3)	12(15.6)	40(51.9)	19(24.7)	5(6.5)	
	대학원 졸업	1(4.2)	3(12.5)	11(45.8)	7(29.2)	2(8.3)	
	기타	0(0)	2(40.0)	2(40.0)	1(2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3(1.8)	23(13.6)	86(50.9)	46(27.2)	11(6.5)	17.070 (.147)
	미용 교육기관	0(0)	2(25.0)	3(37.5)	3(37.5)	0(0)	
	화장품 관련	0(0)	3(75.0)	1(25.0)	0(0)	0(0)	
	기타	0(0)	0(0)	6(75.0)	1(12.5)	1(12.5)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2.4)	7(16.7)	30(71.4)	4(9.5)	0(0)	25.045 (.069)
	2-3년	2(6.1)	6(18.2)	16(48.5)	7(21.2)	2(6.1)	
	3-5년	0(0)	3(11.5)	14(53.8)	7(26.9)	2(7.7)	
	5-10년	0(0)	8(17.0)	19(40.4)	16(34.0)	4(8.5)	
	10년 이상	0(0)	4(9.8)	17(41.5)	16(39.0)	4(9.8)	
직무 만족도	만족	2(1.9)	16(15.2)	54(51.4)	25(23.8)	8(7.6)	4.945 (.763)
	보통	1(1.4)	11(15.7)	36(51.4)	20(28.6)	2(2.9)	
	불만족	0(0)	1(7.1)	6(42.9)	5(35.7)	2(14.3)	
합계		3(1.6)	28(14.8)	96(50.8)	50(26.5)	12(6.3)	

*p<.05

2-1) 세분화된 미용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

다음 [표8]는 세분화된 미용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한 127명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분화로 인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수급’이 57명(4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교육 시 각 업무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 습득’ 30명(23.6%),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23명

(18.1%),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장에서 업무가 가능하므로’ 10명(7.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8] 세분화된 미용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

		세분화된 미용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					χ^2 (p)
구분		업무 교육시 각 업무에 맞는 체계적인 업무 습득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장에서 업무가 가능하므로	세분화로 인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을 보유한 인력수급	기타	
성별	남성	7(21.9)	7(21.9)	2(6.3)	12(37.5)	4(12.5)	4.843 (.304)
	여성	23(24.2)	16(16.8)	8(8.4)	45(47.4)	3(3.2)	
연령	20대 이하	18(21.7)	18(21.7)	5(6.0)	37(44.6)	5(6.0)	11.633 (.168)
	30대	8(30.8)	3(11.5)	5(19.2)	10(38.5)	0(0)	
	40대 이상	4(22.2)	2(11.1)	0(0)	10(55.6)	2(11.1)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3(30.0)	1(10.0)	1(10.0)	3(30.0)	2(20.0)	18.392 (.301)
	고등학교 졸업	10(22.2)	11(24.4)	6(13.3)	17(37.8)	1(2.2)	
	대학교 졸업	14(26.4)	6(11.3)	3(5.7)	27(50.9)	3(5.7)	
	대학원 졸업	3(20.0)	4(26.7)	0(0)	8(53.3)	0(0)	
	기타	0(0)	1(25.0)	0(0)	2(50.0)	1(25.0)	
미용업 유형	미용실	27(24.1)	21(18.8)	8(7.1)	51(45.5)	5(4.5)	12.689 (.392)
	미용 교육기관	1(20.0)	1(20.0)	1(20.0)	2(40.0)	0(0)	
	화장품 관련	1(25.0)	1(25.0)	0(0)	2(50.0)	0(0)	
	기타	1(16.7)	0(0)	1(16.7)	2(33.3)	2(33.3)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1(28.9)	9(23.7)	3(7.9)	13(34.2)	2(5.3)	18.681 (.286)
	2-3년	4(16.7)	5(20.8)	2(8.3)	12(50.0)	1(4.2)	
	3-5년	0(0)	3(17.6)	2(11.8)	9(52.9)	3(17.6)	
	5-10년	7(25.9)	3(11.1)	3(11.1)	14(51.9)	0(0)	
	10년 이상	8(38.1)	3(14.3)	0(0)	9(42.9)	1(4.8)	
직무 만족도	만족	20(27.8)	16(22.2)	2(2.8)	30(41.7)	4(5.6)	12.103 (.147)
	보통	9(18.8)	6(12.5)	8(16.7)	23(47.9)	2(4.2)	
	불만족	1(14.3)	1(14.3)	0(0)	4(57.1)	1(14.3)	
합계		30(23.6)	23(18.1)	10(7.9)	57(44.9)	7(5.5)	

3)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미치는 영향

다음 [표9]는 미용사(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두피 등 민간자격증을 포함한 국가, 사단법인)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8명(4.2%), ‘중요하다’ 43명(22.8%), ‘보통이다’ 69명(36.5%), ‘중요하지 않다’ 56명(29.6%), ‘전혀 중요하지 않다’ 13명(6.9%)으로 나타나 전체 27.0%가 미용사(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두피 등 민간자격증을 포함한 국가, 사단법인)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 미용업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업 유형에 따라서는 미용 교육기관이나 화장품 관련업의 경우 미용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비교적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표의 결과에서 볼수있듯이 미용업 관련 종사자들의 (일반) 보편적인 생각은 자격증이 실무에서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 본인이 별도로 받은 서술형 질문의 답변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답변이 미용업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을 제공 하는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된 업종인데 1~3개월간의 짧은 미용사 시험 준비기간후 자격증 취득한 실력으로는 실질적으로 손님의 접객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었다.

[표 9]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미치는 영향

구분		미용사 자격증이 직원 채용 시 미치는 영향					χ^2 (p)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성별	남성	2(4.0)	8(16.0)	20(40.0)	10(20.0)	10(20.0)	20.744*** (.000)
	여성	6(4.3)	35(25.2)	49(35.3)	46(33.1)	3(2.2)	
연령	20대 이하	4(3.6)	23(20.5)	47(42.0)	31(27.7)	7(6.3)	4.438 (.816)
	30대	3(5.7)	15(28.3)	15(28.3)	16(30.2)	4(7.5)	
	40대 이상	1(4.2)	5(20.8)	7(29.2)	9(37.5)	2(8.3)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3(30.0)	3(30.0)	3(30.0)	0(0)	11.637 (.769)
	고등학교 졸업	1(1.4)	20(27.4)	29(39.7)	17(23.3)	6(8.2)	
	대학교 졸업	4(5.2)	12(15.6)	30(39.0)	26(33.8)	5(6.5)	
	대학원 졸업	2(8.3)	6(25.0)	6(25.0)	8(33.3)	2(8.3)	
	기타	0(0)	2(40.0)	1(20.0)	2(4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6(3.6)	33(19.5)	64(37.9)	55(32.5)	11(6.5)	27.494** (.007)
	미용 교육기관	2(25.0)	4(50.0)	2(25.0)	0(0)	0(0)	
	화장품 관련	0(0)	2(50.0)	2(50.0)	0(0)	0(0)	
	기타	0(0)	4(50.0)	1(12.5)	1(12.5)	2(25.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2(4.8)	10(23.8)	20(47.6)	8(19.0)	2(4.8)	13.541 (.633)
	2-3년	2(6.1)	6(18.2)	12(36.4)	12(36.4)	1(3.0)	
	3-5년	0(0)	6(23.1)	12(46.2)	6(23.1)	2(7.7)	
	5-10년	2(4.3)	11(23.4)	17(36.2)	14(29.8)	3(6.4)	
	10년 이상	2(4.9)	10(24.4)	8(19.5)	16(39.0)	5(12.2)	
직무 만족도	만족	6(5.7)	23(21.9)	39(37.1)	29(27.6)	8(7.6)	4.500 (.809)
	보통	2(2.9)	18(25.7)	25(35.7)	22(31.4)	3(4.3)	
	불만족	0(0)	2(14.3)	5(35.7)	5(35.7)	2(14.3)	
합계		8(4.2)	43(22.8)	69(36.5)	56(29.6)	13(6.9)	

p<.01, *p<.001

4)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의 수습기간(3-6개월) 후 바로 손님을 상대하 는 업무(고객을 받고 시술하는)의 수행 가능여부

다음 [표 10]는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의 수습기간(3-6개월) 후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고객을 받고 시술하는)의 수행 가능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52명(27.5%)은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가 수행가능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7명(72.5%)은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의 수습기간(3-6개월) 후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고객을 받고 시술하는)의 수행 가능여부

구분		수습기간 후 바로 손님상대 업무의 수행가능		χ^2 (p)
		예	아니오	
성별	남성	9(18.0)	41(82.0)	3.085 (.079)
	여성	43(30.9)	96(69.1)	
연령	20대 이하	41(36.6)	71(63.4)	11.455** (.003)
	30대	8(15.1)	45(84.9)	
	40대 이상	3(12.5)	21(87.5)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3(30.0)	7(70.0)	.501 (.973)
	고등학교 졸업	20(27.4)	53(72.6)	
	대학교 졸업	21(27.3)	56(72.7)	
	대학원 졸업	6(25.0)	18(75.0)	
	기타	2(40.0)	3(6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46(27.2)	123(72.8)	7.340 (.062)
	미용 교육기관	1(12.5)	7(87.5)	
	화장품 관련	0(0)	4(100.0)	
	기타	5(62.5)	3(37.5)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7(40.5)	25(59.5)	11.677* (.020)
	2-3년	9(27.3)	24(72.7)	
	3-5년	10(38.5)	16(61.5)	
	5-10년	12(25.5)	35(74.5)	
	10년 이상	4(9.8)	37(90.2)	
직무 만족도	만족	27(25.7)	78(74.3)	.682 (.711)
	보통	20(28.6)	50(71.4)	
	불만족	5(35.7)	9(64.3)	
합계		52(27.5)	137(72.5)	

*p<.05, **p<.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비교적 연령이 적을수록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가 수행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서도 비교적 종사기간이 적을수록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용업의 업종형태에 대한 인식

다음 [표11]는 미용업(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업종형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이 99명(5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77명(40.7%), ‘판매’ 11명(5.8%), ‘제조’ 2명(1.1%)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미용업(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업종형태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1] 미용업의 업종형태에 대한 인식

구분		미용업의 업종형태에 대한 인식				χ^2 (p)
		제조	서비스	기술	판매	
성별	남성	0(0)	18(36.0)	29(58.0)	3(6.0)	1.508 (.680)
	여성	2(1.4)	59(42.4)	70(50.4)	8(5.8)	
연령	20대 이하	2(1.8)	49(43.8)	55(49.1)	6(5.4)	3.274 (.774)
	30대	0(0)	18(34.0)	31(58.5)	4(7.5)	
	40대 이상	0(0)	10(41.7)	13(54.2)	1(4.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0(0)	3(30.0)	7(70.0)	0(0)	9.671 (.645)
	고등학교 졸업	0(0)	33(45.2)	35(47.9)	5(6.8)	
	대학교 졸업	1(1.3)	34(44.2)	38(49.4)	4(5.2)	
	대학원 졸업	1(4.2)	5(20.8)	16(66.7)	2(8.3)	
	기타	0(0)	2(40.0)	3(6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2(1.2)	72(42.6)	84(49.7)	11(6.5)	5.083 (.827)
	미용 교육기관	0(0)	2(25.0)	6(75.0)	0(0)	
	화장품 관련	0(0)	1(25.0)	3(75.0)	0(0)	
	기타	0(0)	2(25.0)	6(75.0)	0(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2.4)	18(42.9)	21(50.0)	2(4.8)	3.980 (.984)
	2-3년	0(0)	14(42.4)	16(48.5)	3(9.1)	
	3-5년	0(0)	9(34.6)	15(57.7)	2(7.7)	
	5-10년	1(2.1)	19(40.4)	25(53.2)	2(4.3)	
	10년 이상	0(0)	17(41.5)	22(53.7)	2(4.9)	
직무 만족도	만족	2(1.9)	43(41.0)	58(55.2)	2(1.9)	10.826 (.094)
	보통	0(0)	31(44.3)	32(45.7)	7(10.0)	
	불만족	0(0)	3(21.4)	9(64.3)	2(14.3)	
합계		2(1.1)	77(40.7)	99(52.4)	11(5.8)	

3. 미용제도에 대한 인식

다음은 미용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 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다음 [표12]는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 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27명(67.2%)이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 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2명(32.8%)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2-3년이나 3-5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우 70% 이상이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 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2]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 법이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구분		법령에 대한 인지여부		χ^2 (p)
		예	아니오	
성별	남성	32(64.0)	18(36.0)	.315 (.575)
	여성	95(68.3)	44(31.7)	
연령	20대 이하	72(64.3)	40(35.7)	3.298 (.192)
	30대	35(66.0)	18(34.0)	
	40대 이상	20(83.3)	4(16.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7(70.0)	3(30.0)	2.150 (.708)
	고등학교 졸업	47(64.4)	26(35.6)	
	대학교 졸업	55(71.4)	22(28.6)	
	대학원 졸업	14(58.3)	10(41.7)	
	기타	4(80.0)	1(2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115(68.0)	54(32.0)	5.289 (.152)
	미용 교육기관	7(87.5)	1(12.5)	
	화장품 관련	2(50.0)	2(50.0)	
	기타	3(37.5)	5(62.5)	
미용업 종사기간	1년	24(57.1)	18(42.9)	12.497* (.014)
	2-3년	28(84.8)	5(15.2)	
	3-5년	19(73.1)	7(26.9)	
	5-10년	25(53.2)	22(46.8)	
	10년 이상	31(75.6)	10(24.4)	
직무 만족도	만족	74(70.5)	31(29.5)	2.460 (.292)
	보통	46(65.7)	24(34.3)	
	불만족	7(50.0)	7(50.0)	
합계		127(67.2)	62(32.8)	

*p<.05

2) 1986년 이전 국내에 있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인지여부

다음 [표 13]는 1986년 이전 국내에 있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인지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72명(38.1%)이 1986년 이전 국내에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7명(61.9%)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3] 1986년 이전 국내에 있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인지여부

구분		1986년 이전 국내에 있었던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대한 인지여부		χ^2 (p)
		예	아니오	
성별	남성	20(40.0)	30(60.0)	.105 (.746)
	여성	52(37.4)	87(62.6)	
연령	20대 이하	43(38.4)	69(61.6)	.997 (.607)
	30대	18(34.0)	35(66.0)	
	40대 이상	11(45.8)	13(54.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4(40.0)	6(60.0)	1.645 (.801)
	고등학교 졸업	25(34.2)	48(65.8)	
	대학교 졸업	30(39.0)	47(61.0)	
	대학원 졸업	10(41.7)	14(58.3)	
	기타	3(60.0)	2(4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65(38.5)	104(61.5)	1.363 (.714)
	미용 교육기관	4(50.0)	4(50.0)	
	화장품 관련	1(25.0)	3(75.0)	
	기타	2(25.0)	6(75.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1(26.2)	31(73.8)	6.102 (.192)
	2-3년	17(51.5)	16(48.5)	
	3-5년	12(46.2)	14(53.8)	
	5-10년	16(34.0)	31(66.0)	
	10년 이상	16(39.0)	25(61.0)	
직무 만족도	만족	41(39.0)	64(61.0)	1.797 (.407)
	보통	28(40.0)	42(60.0)	
	불만족	3(21.4)	11(78.6)	
합계		72(38.1)	117(61.9)	

3)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

다음 [표14]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한다’ 16명(8.5%), ‘보통이

다' 117명(61.9%), '불만족하다' 49명(25.9%), '매우 불만족하다' 7명(3.7%)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미용업 종사기간, 직무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서는 비교적 미용업 종사기간이 많을수록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에 따라서도 비교적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

구분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현재 미용법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만족도				χ^2 (p)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하다	매우 불만족하다	
성별	남성	5(10.0)	26(52.0)	16(32.0)	3(6.0)	3.202 (.362)
	여성	11(7.9)	91(65.5)	33(23.7)	4(2.9)	
연령	20대 이하	10(8.9)	78(69.6)	21(18.8)	3(2.7)	10.947 (.090)
	30대	5(9.4)	28(52.8)	17(32.1)	3(5.7)	
	40대 이상	1(4.2)	11(45.8)	11(45.8)	1(4.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0(0)	8(80.0)	1(10.0)	1(10.0)	11.195 (.512)
	고등학교 졸업	9(12.3)	49(67.1)	13(17.8)	2(2.7)	
	대학교 졸업	5(6.5)	45(58.4)	24(31.2)	3(3.9)	
	대학원 졸업	2(8.3)	12(50.0)	9(37.5)	1(4.2)	
	기타	0(0)	3(60.0)	2(4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13(7.7)	105(62.1)	45(26.6)	6(3.6)	12.116 (.207)
	미용 교육기관	3(37.5)	4(50.0)	1(12.5)	0(0)	
	화장품 관련	0(0)	3(75.0)	1(25.0)	0(0)	
	기타	0(0)	5(62.5)	2(25.0)	1(12.5)	
미용업 종사기간	1년	2(4.8)	32(76.2)	7(16.7)	1(2.4)	24.824* (.016)
	2-3년	2(6.1)	26(78.8)	4(12.1)	1(3.0)	
	3-5년	5(19.2)	12(46.2)	8(30.8)	1(3.8)	
	5-10년	4(8.5)	31(66.0)	11(23.4)	1(2.1)	
	10년 이상	3(7.3)	16(39.0)	19(46.3)	3(7.3)	
직무 만족도	만족	14(13.3)	59(56.2)	28(26.7)	4(3.8)	33.034*** (.000)
	보통	1(1.4)	55(78.6)	14(20.0)	0(0)	
	불만족	1(7.1)	3(21.4)	7(50.0)	3(21.4)	
합계		16(8.5)	117(61.9)	49(25.9)	7(3.7)	

*p<.05, ***p<.001

4)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 성

다음 [표15]는 제한 사항 및 관리 사항 뿐 아니라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의 제정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그렇다’ 57명(30.2%), ‘그렇다’ 85명(45.0%), ‘보통이다’ 41명(21.7%), ‘필요하지 않다’ 6명(3.2%)으로 나타나 전체 75.2%가 제한 사항 및 관리 사항 뿐 아

나라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최종학력,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먼저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비교적 중졸이나 고졸에 비해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 사항 및 관리 사항 뿐 아니라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업 종사기간에 따라서도 비교적 종사기간이 길수록 제한 사항 및 관리 사항 뿐 아니라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SUNG
UNIVERSITY

[표 15]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 등에 관한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구분		전문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χ^2 (p)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성별	남성	16(32.0)	22(44.0)	10(20.0)	2(4.0)	.326 (.955)
	여성	41(29.5)	63(45.3)	31(22.3)	4(2.9)	
연령	20대 이하	30(26.8)	47(42.0)	31(27.7)	4(3.6)	8.040 (.235)
	30대	20(37.7)	24(45.3)	7(13.2)	2(3.8)	
	40대 이상	7(29.2)	14(58.3)	3(12.5)	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0(0)	3(30.0)	7(70.0)	0(0)	28.758** (.004)
	고등학교 졸업	20(27.4)	31(42.5)	19(26.0)	3(4.1)	
	대학교 졸업	23(29.9)	42(54.5)	9(11.7)	3(3.9)	
	대학원 졸업	12(50.0)	6(25.0)	6(25.0)	0(0)	
	기타	2(40.0)	3(60.0)	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49(29.0)	77(45.6)	37(21.9)	6(3.6)	5.777 (.762)
	미용 교육기관	4(50.0)	4(50.0)	0(0)	0(0)	
	화장품 관련	1(25.0)	1(25.0)	2(50.0)	0(0)	
	기타	3(37.5)	3(37.5)	2(25.0)	0(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2(28.6)	13(31.0)	15(35.7)	2(4.8)	30.016** (.003)
	2-3년	5(15.2)	18(54.5)	10(30.3)	0(0)	
	3-5년	4(15.4)	14(53.8)	5(19.2)	3(11.5)	
	5-10년	16(34.0)	24(51.1)	6(12.8)	1(2.1)	
	10년 이상	20(48.8)	16(39.0)	5(12.2)	0(0)	
직무 만족도	만족	34(32.4)	45(42.9)	23(21.9)	3(2.9)	5.152 (.525)
	보통	16(22.9)	35(50.0)	16(22.9)	3(4.3)	
	불만족	7(50.0)	5(35.7)	2(14.3)	0(0)	
합계		57(30.2)	85(45.0)	41(21.7)	6(3.2)	

**p<.01

5) 새로운 미용관련 법령 제정 시 보완되어야 할 점

다음 [표16]는 규제와 규정만 있는 현 제도가 아닌 새로운 미용관련 법령 제정 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미용인의 복지’가 102명(5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분화된 관련 규정’이나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각 28명(14.8%), ‘업무 규정’ 20명(10.6%), ‘자격증 제도’ 11명(5.8%) 순으로 나타나 미용인의 복지가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새로운 미용관련 법령 제정 시 보완되어야 할 점

구분		새로운 미용관련 법령 제정 시 보완되어야 할 점					χ^2 (p)
		미용인의 복지	세분화된 관련 규정	업무 규정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	자격증 제도	
성별	남성	20(40.0)	12(24.0)	4(8.0)	8(16.0)	6(12.0)	11.283* (.024)
	여성	82(59.0)	16(11.5)	16(11.5)	20(14.4)	5(3.6)	
연령	20대 이하	68(60.7)	11(9.8)	15(13.4)	12(10.7)	6(5.4)	20.840** (.008)
	30대	28(52.8)	11(20.8)	4(7.5)	8(15.1)	2(3.8)	
	40대 이상	6(25.0)	6(25.0)	1(4.2)	8(33.3)	3(12.5)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1(10.0)	3(30.0)	4(40.0)	1(10.0)	35.161** (.004)
	고등학교 졸업	38(52.1)	10(13.7)	10(13.7)	12(16.4)	3(4.1)	
	대학교 졸업	48(62.3)	6(7.8)	7(9.1)	10(13.0)	6(7.8)	
	대학원 졸업	11(45.8)	10(41.7)	0(0)	2(8.3)	1(4.2)	
	기타	4(80.0)	1(20.0)	0(0)	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96(56.8)	22(13.0)	17(10.1)	23(13.6)	11(6.5)	13.361 (.343)
	미용 교육기관	2(25.0)	2(25.0)	1(12.5)	3(37.5)	0(0)	
	화장품 관련	2(50.0)	1(25.0)	0(0)	1(25.0)	0(0)	
	기타	2(25.0)	3(37.5)	2(25.0)	1(12.5)	0(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19(45.2)	10(23.8)	4(9.5)	6(14.3)	3(7.1)	18.737 (.283)
	2-3년	22(66.7)	1(3.0)	6(18.2)	3(9.1)	1(3.0)	
	3-5년	14(53.8)	4(15.4)	3(11.5)	4(15.4)	1(3.8)	
	5-10년	31(66.0)	6(12.8)	3(6.4)	5(10.6)	2(4.3)	
	10년 이상	16(39.0)	7(17.1)	4(9.8)	10(24.4)	4(9.8)	
직무 만족도	만족	57(54.3)	16(15.2)	9(8.6)	17(16.2)	6(5.7)	5.358 (.719)
	보통	40(57.1)	10(14.3)	8(11.4)	9(12.9)	3(4.3)	
	불만족	5(35.7)	2(14.3)	3(21.4)	2(14.3)	2(14.3)	
합계		102(54.0)	28(14.8)	20(10.6)	28(14.8)	11(5.8)	

*p<.05, **p<.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미용인의 복지가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외에 남성의 경우 세분화된 관련 규정이, 여성의 경우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이하나 30대의 경우 미용인의 복지가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40대 이상의 경우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의 경우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미용인의 복지가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6)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17]는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24명(12.7%), ‘큰 영향을 끼친다’ 112명(59.3%), ‘그저 그렇다’ 47명(24.9%),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5명(2.6%),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1명(0.5%) 으로 나타나 전체 72.0%가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미용업 유형, 직무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미용업 유형에 따라서는 미용실이나 미용 교육기관의 경우 화장품 관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에 따라서는 비교적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미용업 관련 법령 제정 시 미용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정도					χ^2 (p)
구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큰 영향을 끼친다	그저 그렇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성별	남성	7(14.0)	27(54.0)	12(24.0)	3(6.0)	1(2.0)	6.100 (.192)
	여성	17(12.2)	85(61.2)	35(25.2)	2(1.4)	0(0.0)	
연령	20대 이하	11(9.8)	66(58.9)	32(28.6)	2(1.8)	1(.9)	8.132 (.421)
	30대	10(18.9)	29(54.7)	11(20.8)	3(5.7)	0(0.0)	
	40대 이상	3(12.5)	17(70.8)	4(16.7)	0(0.0)	0(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2(20.0)	7(70.0)	0(0.0)	0(0.0)	18.809 (.279)
	고등학교 졸업	5(6.8)	47(64.4)	17(23.3)	3(4.1)	1(1.4)	
	대학교 졸업	13(16.9)	47(61.0)	16(20.8)	1(1.3)	0(0.0)	
	대학원 졸업	4(16.7)	13(54.2)	6(25.0)	1(4.2)	0(0.0)	
	기타	1(20.0)	3(60.0)	1(20.0)	0(0.0)	0(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22(13.0)	101(59.8)	41(24.3)	5(3.0)	0(0.0)	31.095** (.002)
	미용 교육기관	2(25.0)	5(62.5)	1(12.5)	0(0.0)	0(0.0)	
	화장품 관련	0(0.0)	1(25.0)	3(75.0)	0(0.0)	0(0.0)	
	기타	0(0.0)	5(62.5)	2(25.0)	0(0.0)	1(12.5)	
미용업 종사기간	1년	3(7.1)	25(59.5)	14(33.3)	0(0.0)	0(0.0)	26.317 (.050)
	2-3년	0(0.0)	22(66.7)	10(30.3)	0(0.0)	1(3.0)	
	3-5년	5(19.2)	13(50.0)	6(23.1)	2(7.7)	0(0.0)	
	5-10년	5(10.6)	30(63.8)	10(21.3)	2(4.3)	0(0.0)	
	10년 이상	11(26.8)	22(53.7)	7(17.1)	1(2.4)	0(0.0)	
직무 만족도	만족	19(18.1)	61(58.1)	24(22.9)	1(1.0)	0(0.0)	22.421** (.004)
	보통	4(5.7)	43(61.4)	19(27.1)	4(5.7)	0(0.0)	
	불만족	1(7.1)	8(57.1)	4(28.6)	0(0.0)	1(7.1)	
합계		24(12.7)	112(59.3)	47(24.9)	5(2.6)	1(.5)	

**p<.01

7)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다음 [표18]는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많다’ 21명(11.1%), ‘많다’ 68명(36.0%), ‘그저 그렇다’ 78명(41.3%), ‘관심 없다’ 17명(9.0%), ‘전혀 관심없다’ 5명(2.6%)으로 나타나 전체 47.1%가 미용관련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미용업 유형, 직무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미용업 유형에 따라서는 미용실이나 미용 교육기관의 경우 화장품 관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만족도에 따라서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보통이거나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구분		미용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χ^2 (p)
		매우 많다	많다	그저 그렇다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성별	남성	7(14.0)	16(32.0)	17(34.0)	7(14.0)	3(6.0)	6.466 (.167)
	여성	14(10.1)	52(37.4)	61(43.9)	10(7.2)	2(1.4)	
연령	20대 이하	12(10.7)	37(33.0)	53(47.3)	8(7.1)	2(1.8)	13.387 (.099)
	30대	5(9.4)	20(37.7)	21(39.6)	4(7.5)	3(5.7)	
	40대 이상	4(16.7)	11(45.8)	4(16.7)	5(20.8)	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1(10.0)	4(40.0)	4(40.0)	1(10.0)	0(0)	23.151 (.110)
	고등학교 졸업	6(8.2)	27(37.0)	29(39.7)	9(12.3)	2(2.7)	
	대학교 졸업	6(7.8)	32(41.6)	32(41.6)	4(5.2)	3(3.9)	
	대학원 졸업	5(20.8)	4(16.7)	12(50.0)	3(12.5)	0(0)	
	기타	3(60.0)	1(20.0)	1(20.0)	0(0)	0(0)	
미용업 유형	미용실	18(10.7)	61(36.1)	72(42.6)	15(8.9)	3(1.8)	26.882** (.008)
	미용 교육기관	3(37.5)	2(25.0)	3(37.5)	0(0)	0(0)	
	화장품 관련	0(0)	1(25.0)	2(50.0)	1(25.0)	0(0)	
	기타	0(0)	4(50.0)	1(12.5)	1(12.5)	2(25.0)	
미용업 종사기간	1년	5(11.9)	12(28.6)	22(52.4)	2(4.8)	1(2.4)	14.580 (.556)
	2-3년	2(6.1)	12(36.4)	17(51.5)	1(3.0)	1(3.0)	
	3-5년	3(11.5)	10(38.5)	8(30.8)	4(15.4)	1(3.8)	
	5-10년	4(8.5)	15(31.9)	21(44.7)	6(12.8)	1(2.1)	
	10년 이상	7(17.1)	19(46.3)	10(24.4)	4(9.8)	1(2.4)	
직무 만족도	만족	14(13.3)	39(37.1)	41(39.0)	8(7.6)	3(2.9)	19.467* (.013)
	보통	4(5.7)	25(35.7)	35(50.0)	6(8.6)	0(0)	
	불만족	3(21.4)	4(28.6)	2(14.3)	3(21.4)	2(14.3)	
합계		21(11.1)	68(36.0)	78(41.3)	17(9.0)	5(2.6)	

* $p<.05$, ** $p<.01$

제 2 절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

1. 미용사법 의 필요성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의 수급이 필요로 하여진다.

뿐만아니라 수급되어지는 인력의 노동력 즉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질도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국내의 미용 종사자를 관리하는 제도는 존재치 아니하다. 오로지 미용업장만 개설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스태프라는 위치에서 미용업에 종사 할수 있으며 법적 제제됨이 없다 하겠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본다면 미용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업무형태와 상이한 제도적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 미용업계의 현실이다.

그와 더불어 검증 되어지지 않은 미용인들을 양산하여 질적 서비스의 수준을 하향 시키고 있다.

현행 미용사 자격증 제도는 필기시험 통과후 별도의 이수시간 없이 실기 시험의 통과만으로 미용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본 자격증제도 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용 면허가 그러하다.

[표 19] 미용사 (일반) 합격률및 응시자수

종목명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	응시	합격	합격률(%)
미용사(일반)	2010	46,496	22,264	47.9%	32,920	13,231	40.2%
미용사(일반)	2009	48,824	23,089	47.3%	33,333	12,996	39%
미용사(일반)	2008	46,567	19,822	42.6%	31,991	11,967	37.4%
소 계		141,887	65,175	45.9	98,244	38,194	38.9

< 표 20 > 미용사의 면허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자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자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국내의 미용 면허에 대한 규정은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자와 동등하게 면허가 부여되는것을 볼수있다.

보편적인 일반 상식으로서 고등학교의 상위개념의 학교의 형태인 대학 그중 전문대학을 이수한 자와 고등 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미용과정을 이수한자와 동일한 면허를 부여하는것이 현실과의 괴리감을 낳게 된다.

현재 국내의 전문대학 과정은 2년이며 고등기술학교의 실제 교육 횟수는 2년이며 추후1년은 현장 실습을 다니게 된다.

인력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는 인력을 수급 하기 위하여는, 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 과정과 그 교육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관련 규정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필요로 하여진다.

이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미용업 관련 교육자의 질을 증명할수있는 정부의 정책 이 필요로 하다.

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경우도 미용사라는 업종이 가지는 그 업종의 특성상 서비스 업이기는 하나 기술이 그 밑바탕에 제공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미용업 종사 시간 혹은 교육 이수시간을 두어 미용인의 자질을 증명을 할 수있도록 그 규정을 새롭게 신설 혹은 제정을 하여야 할것이다.

2. 미용사법 의 입법방안 고찰

1) 면허권자에 관한 입법방안 ¹¹⁾

면허권자란 면허를 허 할수 있는 권한을 지닌 행정청을 의미하며, 행정법상 행정청 이 행하는 행정행위로서, 면허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면허권자를 달리한다.

미용업에 관하여 면허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중위생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미용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미용업의 관리 부처이다. 미용업의 관리부처는 미용업과 관련된 업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11) 위보라. 「미용사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 2009. 57p

미용사 면허의 경우 허가를 받은 면허가 효력을 행사하는 범위는 전국에 걸쳐 있다. 따라서 지역적인 국한성을 갖게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어서 전국적인 범위의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2) 영업업소의 개설

한국의 미용업 영업소 개설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다시 통보제도로 바뀌었다가 신고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이는 면허제도의 연장적인 모습으로서 미용사 자격증으로 만든 미용업소의 개설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증을 면허로 전환 하여 그 면허를 바탕으로 미용업소를 개설 하게 된다.

현행의 제도는 신고 제도로 신고는 강학상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로써 그 법적 성격은 준법률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즉, 신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에 일정한 사항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국가 즉 관할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수리여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미용업이 발전 하기 위하여는 허가제로 전환 함이 마땅하다. 미용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미용업의 규정에 어긋나는 미용업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불법기술등의 변종 미용업을 제한 하기위해서 그러하다. 허나 미용업의 특성상 기술및 서비스가 기본 밑바탕에 있어야 하며 시장 경쟁 원칙에 의하여 질이 낮은 업소는 도태 되어 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미용업의 신고 제도를 유지함이 옳다.

3)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

현행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시행규칙은 다시 시행령에서 영업을 세분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미용업을 미용업(종합),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등 3종으로 세분화면서 그 각각의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2)

< 표2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

제14조(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 자료원 : 법제처. (201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2)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 20890호)
제4조제1호

미용업(종합)은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를 포함하는 헤어부분과, 손톱과 발톱을 손질 또는 화장하는 네일부분, 얼굴을 손질 또는 화장하는 얼굴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포함하는 피부부분 등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가) 행할수 있는 모든 업무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¹³⁾

본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적 해석이 불가능한 한국의 [공중 위생관리법] 은 국내 현 법적 해석의 실정에 의해 유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는 있으나 본 조항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법관의 재량권이 개입되어질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즉 역으로 생각하게 될 경우 본 조항에 없는 새로운 기술방법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위법이 되며 이는 영업을 중지케 이르는 커다란 별적 행정행위로 다가올수가 있다. 그러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가져오는 법의 명령의 하위개념인 [공중 위생 관리 법]에서 따로이 분리하여 독립법인 미용사법을 제정함이 옳다.

13)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 20890호)
제4조제2호

제 4 장 결 론 및 제 언

하나의 산업이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산업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느냐의 척도가 된다. 예전에는 존재치 않았던 통신관련 법규가 생겨나 현재의 IT강국으로 불리우는 한국이 있듯이·미용업의 경우도 매년 종사자의 수와 미용업소의 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매년 향상 되어 옴을 볼수 있다.

이는 우리 미용의 질과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어 미용업이 미용사로 규정되어진 과거의 헤어만 담당하는 업의 수준이 아닌 여러 미용 관련업종의 성장이라 볼수있겠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미용 산업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독립된 미용사법이 필요로 하며 독립된 미용사법이 되기 위하여 미용인들의 인식및 실태조사가 같이 병행 되어야 하였다. 이런점에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미용사 면허제도의 경우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모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면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 미용업을 관리하는 시·군·도지사가 아닌 실질적인 미용업에 관련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면허의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현 제도의 취득하기 쉬운 이수 조건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자체 내부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면허제도도 자격증 제도와 마찬가지로 미용사의 자질을 명확히 증명 할수 있도록하여 질적 양적 향상된 미용업 종사자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미용사 자격증 제도의 실질적인 타당성 확립이다. 현 미용사 자격증 제도는 크게 3단계로 분류되어지는 입문자, 숙련자, 고급자 즉 스텝, 디자이너, 원장 의 단계가 적용되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미용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닌 알고 있는 수준의 미용사를 증명하여주는 미용사제도와 미용업

종사기간이 8년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미용장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자격증제도의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현 미용사제도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후 바로 현장에서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실무와 제도의 괴리감이 발생하였다. 이에 미용사 자격증 제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증명 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최소 이수시간 이수제의 도입을 예로 들수 있을것이다.

셋째, 통합입법으로서의 미용사법이 아닌 독자성을 가진 개별법으로서의 입법이다. 예전 미용사및 미용사법이 가진 법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미용업의 규모와 그 내용에 맞는 개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로인하여 미용인들은 각 종사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증대 되며 새로운 미용사법이 제정되었을시 [공중위생관리법] 혹은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에서는 적시하지 못하는 미용인의 복지등에 관한법률 조항을 신설하여 미용인들의 복지와 업무에 더욱 원활하게 도움을 줄수 있을것이다.

법은 지켜질때 그 존재 가치가 생겨나며 또한 법은 법으로인하여 보호받는 이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 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이 생겨나게 될 경우 당해 산업은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더욱 체계적이 되며,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 시키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 본 연구로 인하여 미용 관련 제도의 정비에 있어 한마디의 말이 더하여져 미용인들의 복지와 수준,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연구 자료

- 강연수, 「미용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동덕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 2000.
- 강영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미용산업 경영동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9.
- 김덕성, 「미용기술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0.
- 류연옥,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10
- 배현숙, 「피부미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한대학교 대학원. 2011.
- 서희원, 「한국 미용사 면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2003.
- 송연숙, 「미용사법 법규제정의 필요성」.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과학 대학원. 2004.
- 이미선,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 연구 : 네일(미용)아트의 법제화 필요성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 위보라, 「미용사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건양대학교 대학원. 미용학과. 2009.
- 정연구, 「한국 미용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 관동 대학교 행정학과 . 1998.
-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규제행론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3
- 최은정, 「한국 미용사 면허제도의 고찰과 국제적 조화방안」. 동덕여자대학교 미용 보건대학원. 2009.

2. 단행본

류은주, 『이·미용 공중 위생 관리 법규』 . 청구문화사, 2002
이한웅 외, 『미용법규론』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2008
주수경 외, 『미용법규』 . 성화 .2003
하상균, 『행정학』 .좋은사람들 . 2002.
현암사, 『소법전』 . 현암사 . 2006.

3. 자료

문화 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안, 2007.11.
뷰티산업 진흥법(안), 2010
산업인력관리공단 - 국가 직업 능력 표준 미용서비스, 2003
삼성경제연구소 -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 2002
조성준 의원 대표 발의, 미용사법안, 2000.9
한국 네일 협회 - 네일미용 자격증 취득자 현황,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수준향상 방안 연구,
20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 뷰티산업의 현황 및 비전. 2010

4. 온라인 자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미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얻고 연구 하기위하여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오롯이 미용 제도의 연구에만 사용 될 것이며 앞으로
미용계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주의깊게 읽어 보신후 신중히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
지는 연구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年 9 月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 전공
연구자 : 김 동 훈

I.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4. 현재 종사하고 계신 미용업의 유형은?

- ① 미용실 ② 미용 교육기관
③ 화장품품 관련 ④ 피부관리실 ⑤ 기타

5. 귀하의 미용업 종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 귀하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II. 다음은 『자격증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1. 개정된 미용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정확히 알고 숙지하고 있다. ② 대강의 내용만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관심 없음

2. 일반과 피부로 분리된 미용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1. 분리된 미용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기대되는 영향은?

- ① 업무 교육시 빠른 습득
- ②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 ③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장에서 업무가 가능하므로
- ④ 세분화 로 인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수급
- ⑤ 기타

3. 미용사(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두피 등 민간자격증을 포함한 국가, 사단법인) 자격증이 직원 채용시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매우 중요하지 않다.

3-1.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 후에 바로 업무에서 일정의 수습기간 후에 바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2. 위의 질문에서 업무의 수행이 (가능/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

Ⅲ. 다음은 『미용 제도에 관한 내용』 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1. 미용사/이용사 및 미용업에 관련된 법이 별도의 법령이 아닌 【공중위생
법】 에 의하여 관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1986년도 이전에 해외의 다른 나라(일본, 미국 등)들처럼 국내에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현재 미용업에 대한 미용업에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제한 사항 및 관리사항뿐 아닌 기타 업종의 복지 및 혜택에 관한 전문
미용업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새로운 법령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점이 보완 되어야 할까요?

- ① 미용인의 복지 ② 세분화된 관련 규정 ③ 업무 규정
④ 미용업에 대한 정확한 규정 ⑤ 자격증 제도

6. 미용업에 관련된 법령이 생기게 된다면 미용업의 발전에 끼칠 영향은?

- ①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② 큰 영향을 끼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7. 귀하의 미용 관련 제도에 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없다. ⑤ 전혀 관심없다.

* 귀중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Beauty System -Focused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Cosmetologist Act-

Kim Dong-hoon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In order for a society to be managed, we need a law that regulate the society. The social regulations, such as Act and customary law, are born in accordance to the law.

Similarly, there was the Act on [Barber and Cosmetologist], beauty-related law even in our past beauty industry, but with enacted [Public Health Act], the Act on [Barber and Cosmetologist] was repealed, and integrated into [Public Health Act] by integrated legislation. The national authorized certificate system on cosmetologist(skin-care specialist) and master beautician, and the [Public Health Act] were changed into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current beauty system is controlled b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law is a social norm, which is

regulated by state power. The law regulating it has been enacte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y. Commercial activities have started from with the most basic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since long before. The enactment of diverse customary laws on these commercial activities has need of the related legislations, having Acts or customary laws like commercial activities-related, in short, domestic commercial law anywhere in the world.

With the advancement of industry, the control and development of it have need of the related legislation. In shor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economic growth online, the Communications Act and diverse online laws corresponding to this were enacted.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E-commerce Act] on commercial activities on the Internet. The beauty industry was more specialized and fragmented while continuing to prosper as years go by. The beauty industry was very diversely, widely and professionally changed to the form of beauty-related education, hair shop, beauty-related magazine, beauty-related product shop, skin care parlor and nail care shop as well as the first form, hair treatment, reaching its present form.

Like this, according to 'A Study on Public Sanitation Improvement Strategy for National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that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had surveyed in 2007, the improved beauty industry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reached 3.3 trillion won in size. In 2011,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support policies by deciding the beauty industry as a new economy growth engine.

Unlike this real move, the beauty system has nothing to do with real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nsolidate technical work and service work due to the nature of the beauty industry, each organization and government

department have quite different standards of the beauty industry.

The problems of real effect and separation of certificate system occurred in the segmentation of cosmetology (beauty treatment market including beauty shop, skin care shop, and nail shop), the biggest market of the beauty industry and each work forms of segmentalized cosmetology such as the range of work in beauty shops, skin, nail art, hair shop). 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necessity to examine and improve the basic problems related to the beauty industry, not the problems of each part, and turning the beauty industry into one industry's axis, with cosmetology being a new industry growth engine in the future through greater advances.

